

수의 생물학제제의 유통경로 이대로 좋은가

오상호*

사람에게 있어 망각이란 때로는 그 어떠한 약보다도 효과적이고 없어서는 안될 생체의 작용이라는 데는 이의가 없다. 그러나 사람이기에 어떠한 경우에라도 망각을 해서는 안되는 것을 망각하고서야 발전을 기대하기란 어려울 것이다.

한동안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한의사와 약사의 한약조제권을 둘러싼 치열한 대국민 성명전도 이제 적어도 표면적이나마 조용히 수습되어가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수의사의 한사람인 나로서는 웬지 마음 한 구석을 자리잡고 있는 공허함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중과부적이라 했던가. 상대적으로 힘 있고 수적으로 압도하는 약사들을 상대로 단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이유를 전가의 보도로 삼아 UR이다 뭐다 하는 사상초유의 거대한 도전 앞에 자기 스스로의 앞날도 걱정하기 바쁜 축산단체나 유관업체의 체면치레용 지원아래 약사법 개정에서 수의사의 권리를 제대로 찾는다는 것이 사실 불가능한 것이기도 하다.

어쩌면 약사들의 입장에서 보면 한의사와의 업권 다툼에서 보다 많은 적을 만들고 싶지않다는 계산에서 일보후퇴한 것일런지도 모르겠다. 하여튼 업권회복을 위해서 우리 수의사들이 보여준 직업의식이란 것은 글자그대로 함량미달이었다고 여겨진다. 우선 개정될 약사법에 의하면 '동물병원의 개설자는 제3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물사육자에게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얼핏보면 그나마 수의사의 권리를 약간이라도 찾았다고 보여지지만 한번 더 생각해보면 오히려 수의사의 능력을

평가절하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현재 가축약품 판매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있는 수의사의 경우에 이정도라면 자신의 업무에 상당한 보탬이 될 것이라 자기만족을 할련지도 모르겠지만 실로 위험천만의 말씀이다. 가정해보자. 이제 이 법이 시행되면서 지금까지 동물 진료에만 전념하여 오던 어느 동물병원에서 우연한 기회에 양축가의 요청으로 항생제나 예방약을 판매하였다고 하자. 이것은 어느새 그 약품의 종류나 규모에서 이전의 일회적이던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질 것이라 불문가지이리라. 이렇게 되고 보면 기존 가축약품상사는 가축약품상사대로 동물병원은 동물병원대로 또다른 무한경쟁의 불필요한 마찰속으로 빠져들게 될 것이다. 한편으로는 가축 또는 동물을 사육하고 있는 사람이 동물병원에 들러서 약품을 판매하라고 요구하였을 경우 동물병원을 개업하고 있는 원장이 당신의 동물병원 운영방침을 설명하고 판매를 거절할 수도 있겠으나 이 과정에서 겪을 개업수의사로써의 자존심은 차치하고라도 불필요한 마찰(판매거부 등으로 인한)로 최악의 사태를 맞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으리라 믿는다.

앞으로도 우리는 지속적으로 '수의사도 동물약품 판매업을 할 수 있다'로 하던가 아니면 최소한 생물학제제(가능하다면 호르몬제제 및 향정신성 의약품 까지)인 예방약 및 혈청제제약 만이라도 수의사만이 취급·사용될 수 있도록 한번 더 약사법을 개정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실제로 수의 생물학제제의 유통 및 취급현황을 보면 과연 생물학제제로서의 효용성이 있겠는지 부터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부산 대신동물병원

먼저 생물학제제를 사용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는 것은 전염성 질병의 예방과 치료효과이겠으나 이들 중 예방은 치료보다 더욱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매우 경제적이라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1미리리터의 예방은 1리터의 치료가치가 있다.”라는 격언을 반추하더라도. 따라서 생물학제제의 사용은 전염성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연장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을 사용해서 성취되는 것은,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이것이 작용하는 원리에 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 가로써 결정된다.

가령 화가가 그림을 그리기 위해 필요로 하는 모든 도구, 즉 붓, 물감, 화선지 등을 가지고 있는 것과 유사하다. 화가는 이러한 용구를 사용하여 형태, 색채, 도안을 조화시켜 통일된 전체를 형성하고 있는 완전한 그림을 그려낼 수 있다. 이 사실은 그가 이미 얻은 바 있는 숙련과 지식의 결합이 용구의 사용을 이끌고 또한 명령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재능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동일한 용구를 사용할 수는 있으되 최종의 결과는 동일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생물학제제를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생물학제제를 사용하는 사람이 이것이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잘 알고 그리고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기와 환경아래에서 이것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그 결과는 천부의 재능이 없는 사람에 의해서 그려내어진 그림의 그것과 비슷하다. 생물학적제제의 남용은 이것이 설령 전문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하더라고 잘 못된 처치인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한가. 생물학제제의 제조업체나 감독기관의 타성에 젖은 그것은 별개로 하더라도 제조업소의 창고를 떠난 제품은 일반차량 또는 냉장차에 의해 도매업소(도도매업소)로 이동하여 소매업소(동물병원 또는 축산단체 또는 애견센타)를 거쳐 실수요자에게로 최종 전달된다. 이 과정에서 과연 제품의 특성이나 보관·운반 환경에 대하여 얼마나 숙지하고 있으며 그 적용되는 동물의 건강상태, 나이, 모체이행항체의 유무에 관하여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는 제쳐두고라도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수의사를 제외하고 그 누가 있겠는가.

일례로 양계장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ND백신(뉴캣슬백신)의 경우를 살펴보자. 제조업체의 제품창고에서 수화물운송회사(정기화물 또는 수화물 취급 역)로 운반되고 여기서 일정시간을 대기 하였다가 수송수단에 의하여 종착지로 도착하고 다시 도매업체로 연락하여(직접 택배되기도 한다) 업소의 창고에 보관되다가 일상적인 교통수단에 의하여 소매업소로 공급되거나 양축농가에 전달된다. 이 과정에서의 운반환경과 시간적인 경과는 매우 다양하여 생물학제제의 안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농장배달을 하는 경우에는 방문코스에 따른 이동으로 조잡한 보존수단에 의한 오랜 시간의 경과로 과연 생물학제제의 안정성을 제대로 유지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농장에서 개체별 접종시(ND 사독백신) 계군의 건강상태나 잔류항체의 역기는 고려하지 않고 종계장 또는 제약회사의 추천프로그램에 따라 일률적으로 접종하고 있는 실정이며 심지어 상온에 방치된 상태로 1시간 또는 2시간 이상 경과하여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오늘날 까지도 닭의 뉴캣슬병, 돼지의 돈콜레라, 개의 디스템바가 이토록 기성을 부리고 있는 근원이 생물학제제의 유통경로 및 무자격취급자의 무분별한 취급과도 상당한 관련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근본적으로 현재의 수의생물학제제의 유통구조 및 취급하는 사람의 자격을 엄격히 규제하고 아울러 감독기관 및 제조업체의 품질유지 및 향상을 위한 음부즈맨제도의 도입이 요구되는 시점이기도 하다. 구호로만 외치는 UR장벽 극복이 아니라, 국가이익을 전제로한 미비한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만이 무한경쟁의 세계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의 축산산업을 보호할 수 있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양성한 고급인력의 적절한 활용으로 인력수급의 차질을 줄일 수 있으며, 아울러 7,000여 수의사들의 자긍심을 바탕으로 그들이 국가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독려하여야 할 것이다.

허술한 외양간을 고치는데 드는 약간의 비용때문에 외양간의 소를 잃어버리는 우를 더이상 범하지 말아야 하지 않겠는가.